



1. 火保法 施行令 改正

지난 8월 18일 大統領令 第 11208 號로 火保法 施行令이 改正 公布되어 이미 各部署에 公文으로 通報된 바 있다.

同 法令은 우리 協會의 設立 根據로서의 重要性은 勿論, 安全點檢業務에 있어서도 建築物에 대한 點檢對象與否를 判定·總括하는 根幹이기 때문에 點檢職員들로서는 이 法令과 항상 가까이 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래서 本號에서는 點檢業務遂行에 便宜를 도모하고자 그 改正內容을 掲載한다.

화보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신구 대비 및 해설

개정전	개정령 [○대통령령 제 11208 호 ○ 83. 8. 18 공포]	비고
제 2조(특수건물) (1) (본문기재 생략)	제 2조(특수건물) (1)	○ 용어보완
1. 국유 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 중 연면적 이 1,000 <u>평방미터</u> 이상인 건 물 및	1. 1,000 <u>제곱미터</u>	
2.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규정한 사설강습소로 사 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 <u>평방미터</u> 이상인 건물	2. 330 <u>제곱미터</u>	○ 용어보완
7. 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 분의 연면적이 1,000 <u>평방미터</u> 이상인 건물	7. 1,000 <u>제곱미터</u>	○ 용어보완
8. 시장법 제2조 제3호에 규정 한 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8. 제 2조 제2호에	○ 상설시장
※ 市場法 제 2조(정의) 본법에서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市場法 제 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허가자<法 6 條>: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정기시장"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임) - 허가요건<法 7 條, 令 4 條, 5 條>: 1. 전물의 자기 소유 분 또는 직영 첨포
1. 각형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 하고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다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내집 하여 물품의 매매, 교환을 행하 는 장소	1. "시장"이라함은 상설시장과 정 기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라함은 제7조 제 1 항 각호의 시장 개설 요건을 갖추고 일정 구역 안의 하나의	

개정전	개정령	비고
2. 전호의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내집하여 물품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장소	전물(지하도에 부설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영업자가 상시 물품의 매매, 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에 지붕, 기둥, 또는 벽을 공통으로 하는 건물 및 동일 구역 안에 2 개 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건물로 본다.	가허가 건물 면적 또는 매장 면적의 100 분의 30 이상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일 것.
3. 20 인 이상의 영업자가 각형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 동일 전물내에서 물품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장소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에서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 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물 면적(연면적)은 도매시장… 5천 제곱미터 이상 일반 소매시장 … 1,500 제곱미터 이상(서울 이외 700 제곱미터 이상)
	4. “연쇄화사업”이라 함은 ∴ 제 2호 中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범위는 시장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상공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 1 항의 별표 1 : 물품의 매매, 교환을 지원하는 용역 범위 — 제 2 항 : 상설시장의 매장 면적 중 용역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백화점… 5,000 제곱미터 이상(서울 이외 3,500 제곱미터 이상) 쇼핑센타… 10,000 제곱미터 이상(서울 이외 5,000 제곱미터 이상) 대형점… 1,500 제곱미터 이상 (서울 이외 700 제곱미터 이상) 일 것.
	※ 市場法 附則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82. 7. 1.) 당시 종전의	3. 매장 면적은 전물 면적의 60% 이상일 것. 1. 유용물 시설, 소비자 보호 시설, 점포 기본 시설, 위생 시설을 갖출것.

개정전	개정령	비고
	<p>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이하 "기존시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기존 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 <u>市場法 施行令 附則 ②</u> (허가 기준 구비 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법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존시장 개설자가 그 기간 내에 법 제7조 제1항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 상설시장이 아닌 것은 옥내판매장 조항 적용 要</p>
<p>9.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유홍음식점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에 규정하는 요리점, 무도장, 카바레 또는 바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 면적이 330 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에 2종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 우의 그 연면적은 2 이상의 업 종에 대한 <u>면적의 합산으로</u> 한 다.</p> <p>※ 食品衛生法 施行令 第9條 (영업의 종류) <본문 및 제1호 기재 생략> 2. 유홍음식점 영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홍에 종사하는자 또는 첨객부를 두어 행하는 음 식점 영업을 말한다.)</p>	<p>9.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유홍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이 경우에 2종 이 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의 그 연면적은 2 이상의 업종에 대한 <u>면적을 합 산한 것으로</u> 한다.</p> <p>※ 食品衛生法 施行令 第9條 (영업의 종류) ① <본문·1~2號·4~48號 기재 생략></p> <p>3. 유홍음식점 영업: 유홍종사자 를 두고 주류와 음식점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p>	<p>○ 유홍음식점 1, 2, 3 종 중 제1종 → 유홍음식 점 전부</p>

개정전	개정령	비고
<p>〈제3호~43호 기재 생략〉</p> <p>※ <u>地方稅法 施行令 第103條</u> (제1종 장소) ① 법 제1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리점”이라 함은 2. “무도장”이라 함은 3. “캬바레”라 함은 4. “바”라 함은 <p>② 〈기재 생략〉</p> <p><u>第104條</u>(제2종 장소) <본문 기재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2. “호텔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라 함은 <p><u>第105條</u>(제3종 장소) <본문 기재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라 함은 2. “다방”이라 함은 <p>11. 가구수 10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1,000 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건물</p> <p>12. 연면적의 합계가 1,000 평방미터 이상인 공장 건물과 수출 산업 공업 단지 개발 조성법에 의한 공업 단지에 소속된 모</p>	<p>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 유흥음식점(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당, 바아, 비어홀, 살롱, 요정 등)과, 무도 유흥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등)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흥음식점 또는 무도 유흥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p> <p>② 〈기재 생략〉</p> <p><u>同施行令 附則 ③</u> (무도 유흥음식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82. 10. 2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점 영업 중 카바레,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무도 유흥음식점의, 요정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 유흥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요정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무도 유흥음식점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판할 허가 판정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도 유흥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1. 1,000 제곱미터</p> <p>.....</p> <p>12.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물과 공업 단지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 단지 중 한국 수</p>	<p>○ 용어보완</p> <p>○ 용어보완</p> <p>○ 수출 산업 공업 단지 개발 조성법의 폐지 (78. 1. 30)에 따라 당</p>

개정전	개정령	비고								
돈 공장 및 그 부속 건물	<u>출 산업 공업 단지에 소속된 모</u> 돈 공장 및 그 부속 건물	해 공업 단지는 공업 단지 관리법 상의 공업 단지 중의 하나로 되었기 때문임.								
※ <u>輸出産業團地開發助成法 第2條</u> (정의) ① 이 법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수출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 용지를 말한다.	※ <u>工業團地管理法 第3條</u> (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 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 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u>工業團地管理法施行令 第3條</u> (공업 단지의 적용 범위) 中別表									
제 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지역은 서울특별시, <u>부산시</u> , <u>대구시</u> , <u>인천시</u> , 대전시, 광주시 및 전주시로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업단지 명</th> <th>위치</th> <th>관리기관</th> <th>유형</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수출 산업공업 단지</td> <td>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인천시 경기도 시흥군</td> <td>한국수출 산업公團</td> <td>직할工業團地</td> </tr> </tbody> </table> <p><이하 기재 생략></p>	공업단지 명	위치	관리기관	유형	한국수출 산업공업 단지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인천시 경기도 시흥군	한국수출 산업公團	직할工業團地	
공업단지 명	위치	관리기관	유형							
한국수출 산업공업 단지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인천시 경기도 시흥군	한국수출 산업公團	직할工業團地							
제 5조(보험 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 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u>직할시</u> , 대전시, 광주시 및 전주시로 한다.	○ 직할시...부산, 대구, 인천								
1. 사망의 경우에는 <u>50 만원</u> 2. 부상의 경우에는 ② - ③ (기재 생략)	제 5조(보험 금액) ① 1. <u>500 만원</u> 2. ② - ③	○ 신생체보험금액(사망)을 10 배 인상								
제 10조(협회비의 출연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 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비용(이하 “협회비”라 한다.)은 보험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 협정에 의하여 공동 인수한 보험료	제 10조(협회비의 출연 등) ① 제 17조의	○ 보험업법 개정으로 관계 조문 변경								

개정전	개정령	비고
수입의 100 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p>.....</p> <p><u>②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수입 보험료에 대한 협회비는 협회가 손해 보험 회사의 보험 사고의 경감을 위하여 화재 예방 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u></p> <p><u>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u></p> <p>.....</p> <p>.....</p> <p><u>④</u></p> <p>.....</p> <p>.....</p> <p>.....</p> <p><u>⑤ 협회는 제 4 항의</u></p> <p>.....</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인수분(화재 대행) 이외의 수입 보험료 중 일정한 보험 종목의 보험료 × 100 분의 5 이내율(率) ○ 항체하 ○ 신설된 제 2 항의 협회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제 1 항의 협회비와 마찬가지로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항체하 ○ 항체하
<p><u>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수입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협회비의 출연 방법 및 출연 시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u></p> <p><u>③ 협회는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손해 보험 회사에 대하여 협회비의 전도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④ 협회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비의 전도를 받은 때에는 당해년도 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u></p>	<p>.....</p> <p>.....</p> <p>.....</p> <p>.....</p> <p>.....</p> <p>.....</p> <p>.....</p>	
	부 칙	
	<p><u>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u>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일… 83. 8. 18 (대통령령 제 11208 호) ○ 공포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한 신체보험금액은 종전의 보험금액을 적용함.

개정전		개정령		비고																																																																														
(별표) <u>상해 구분 및 보험 금액</u>		(별표) <u>상해 구분 및 보험 금액</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배책보험금액(상해)을 각급별로 공히 10배로 인상함. ○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① 항 제2호, ...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금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항...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화보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급별</th> <th>보험금액</th> <th>상해부위</th> </tr> </thead> <tbody> <tr><td>1급</td><td>40 만원</td><td></td></tr> <tr><td>2급</td><td>35</td><td></td></tr> <tr><td>3급</td><td>30</td><td></td></tr> <tr><td>4급</td><td>25</td><td></td></tr> <tr><td>5급</td><td>21</td><td></td></tr> <tr><td>6급</td><td>18</td><td></td></tr> <tr><td>7급</td><td>15</td><td></td></tr> <tr><td>8급</td><td>12</td><td></td></tr> <tr><td>9급</td><td>9</td><td></td></tr> <tr><td>10급</td><td>7</td><td></td></tr> <tr><td>11급</td><td>4</td><td></td></tr> <tr><td>12급</td><td>2</td><td></td></tr> </tbody> </table>		상해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40 만원		2급	35		3급	30		4급	25		5급	21		6급	18		7급	15		8급	12		9급	9		10급	7		11급	4		12급	2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급별</th> <th>보험금액</th> <th>상해부위</th> </tr> </thead> <tbody> <tr><td>1급</td><td>400 만원</td><td></td></tr> <tr><td>2급</td><td>350</td><td></td></tr> <tr><td>3급</td><td>300</td><td></td></tr> <tr><td>4급</td><td>250</td><td></td></tr> <tr><td>5급</td><td>210</td><td></td></tr> <tr><td>6급</td><td>180</td><td></td></tr> <tr><td>7급</td><td>150</td><td></td></tr> <tr><td>8급</td><td>120</td><td></td></tr> <tr><td>9급</td><td>90</td><td></td></tr> <tr><td>10급</td><td>70</td><td></td></tr> <tr><td>11급</td><td>40</td><td></td></tr> <tr><td>12급</td><td>20</td><td></td></tr> </tbody> </table>		상해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400 만원		2급	350		3급	300		4급	250		5급	210		6급	180		7급	150		8급	120		9급	90		10급	70		11급	40		12급	20		
상해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40 만원																																																																																	
2급	35																																																																																	
3급	30																																																																																	
4급	25																																																																																	
5급	21																																																																																	
6급	18																																																																																	
7급	15																																																																																	
8급	12																																																																																	
9급	9																																																																																	
10급	7																																																																																	
11급	4																																																																																	
12급	2																																																																																	
상해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400 만원																																																																																	
2급	350																																																																																	
3급	300																																																																																	
4급	250																																																																																	
5급	210																																																																																	
6급	180																																																																																	
7급	150																																																																																	
8급	120																																																																																	
9급	90																																																																																	
10급	70																																																																																	
11급	40																																																																																	
12급	20																																																																																	

